

즉시접수	당일접수
제출자	
총	건

금지사항 부기등기 신청

접 수	년 월 일	처 리 인	등기관 확인	각종 통지
	제 호			

부동산의 표시

등기원인과 그 연월일	년 월 일	민간임대주택 등록	
등 기 의 목 적	민간임대주택 등기		
금 지 사 항	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		
구분	성 명 (상호·명칭)	주민등록번호 (등기용등록번호)	주 소 (소 재 지)
신 청 인			

등 록 면 허 세	금	원
지 방 교 육 세	금	원
세 액 합 계	금	원
등 기 신 청 수 수 료	금	원
	납부번호 :	
	일괄납부 :	건 원
첨 부 서 면		
·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	통	〈기 타〉
·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	통	
· 위임장	통	
· 임대사업자등록증	통	
년 월 일		
위 신청인	인	(전화:)
(또는)위 대리인		(전화:)
지방법원		귀중

- 신청서 작성요령 -

- * 1.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.
- 2.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.
- 3. 담당 등기관이 판단하여 위의 첨부서면 외에 추가적인 서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즉시접수	당일접수
제출자	
총	건

금지사항 부기등기 신청

접 수	년 월 일	처 리 인	등기관 확인	각종 통지
	제 호			

① 부동산의 표시				
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00구 00동 100 서울특별시 00구 00동 101 00아파트 가동 [도로명주소] 서울특별시 00구 00대로00길 10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1-101 구 조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1층 101호 86.03㎡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1. 서울특별시 00구 00동 100 대 1,400㎡ 2. 서울특별시 00구 00동 101 대 1,600㎡ 대지권의 종류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1,2 : 3,000분의 500				
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		2020년 11월 5일 민간임대주택 등록		
③ 등 기 의 목 적		민간임대주택 등기		
금 지 사 항		이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 계속 임대해야 하고 같은 법 제44조의 임대료 증액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민간임대주택임		
구분	성 명 (상호·명칭)	주민등록번호 (등기용등록번호)	주 소 (소 재 지)	
④	김 〇 〇	000000-0000000	서울특별시 00구 00로 000 (00동)	
신				
청				
인				

⑤ 등 록 면 허 세	금	6,000 원
⑤ 지 방 교 육 세	금	1,200 원
⑥ 세 액 합 계	금	7,200 원
⑦ 등 기 신 청 수 수 료	금	3,000 원
	납부번호 : 20-12-12345678-0	
	일괄납부 :	건 원
⑧ 첨 부 서 면		
삭1행 ·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1통 ·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 1통 · 위임장 _____ 통 · 임대사업자등록증 1통	〈기 타〉	
	2020년 12월 11일	
	⑨ 위 신청인 김 0 0 인 (전화 : 010-0000-0000)	
	(또는)위 대리인 (전화:)	
서울중앙 지방법원		등기국 귀중

- 신청서 작성요령 -

- * 1.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의 일련번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.
- 2. 신청인란등 해당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을 경우에는 별지를 이용합니다.
- 3. 담당 등기관이 판단하여 위의 첨부서면 외에 추가적인 서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등기신청안내서 - 민간임대주택 등기 신청

■ 민간임대주택 등기란

임대사업자는 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에 따라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를 신청하여야 합니다. 이 등기는 임대사업자의 등록 후 지체 없이 하여야 하고,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에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소유권보존등기와 동시에 하여야 합니다.

■ 등기신청방법

① 단독신청

등기신청인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단독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.

② 대리인에 의한 신청

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. 다만,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(業)으로 할 수 없습니다.

■ 등기신청서 작성 방법(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만 작성 가능)

① 부동산의 표시란

임대목적물을 기재하되, 등기기록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. 건물의 소재와 지번, 도로명주소(등기기록 표제부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), 구조, 면적, 건물의 종류,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,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,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면 됩니다.

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

등기원인은 '민간임대주택 등록'으로, 연월일은 임대사업자등록증 상의 '해당 주택 등록일'을 기재합니다.

③ 등기의 목적란

'민간임대주택 등기'로 기재합니다.

④ 등기신청인란

임대목적물의 소유자(공유자인 경우 '전원')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.

⑤ 등록면허세·지방교육세란

1건당 6,000원 등록면허세, 1,200원 지방교육세를 영수필확인서에 의하여 기재합니다.

⑥ 세액합계란

등록면허세액, 지방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.

⑦ 등기신청수수료란

㉠ 1건당 3,000원의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액을 기재하며, 등기신청수수료를 은행 현금납부, 전자납부, 무인발급기 납부 등의 방법에 따라 납부한 후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납부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.

㉡ 여러 건의 등기신청에 대하여 수납금융기관에 현금으로 일괄납부하는 경우 첫 번째 등기신청서에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고 해당 등기신청수수료, 납부번호와 일괄납부 건수 및 일괄납부액을 기재하며, 나머지 신청서에는 해당 등기신청수수료와 전 사건에 일괄 납부한 취지를 기재합니다(일괄납부는 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만 가능함).

⑧ 첨부서면란

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.

⑨ 신청인등란

㉠ 등기신청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,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.

㉡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대리인의 인장을 날인 또는 서명합니다.

▣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

< 신청인 >

위임장

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.

< 시·구·군청, 읍·면 사무소, 동 주민센터 >

① 임대사업자등록증(원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 또는 자치구청장(이하 “시장·군수·구청장”이라 한다)이 발급한 ‘임대사업자 등록증’(「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3호 서식)을 첨부합니다. 해당 등록증은 렌트홈(<http://www.renthome.go.kr>)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.

② 등록면허세(지방교육세 포함) 영수필확인서

시장, 구청장,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면허세 납부서(OCR용지)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만 신청서의 등록면허세액표시란의 좌측상단 여백에 첨부하거나, 또는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에서 출력한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첨부합니다.

< 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, 금융기관 등 >

등기신청수수료

대한민국법원 인터넷등기소(<http://www.iros.go.kr>)를 이용하여 전자적인 방법(신용카드, 계좌이체, 선불형지급수단)으로 납부하고 출력한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거나,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수납금융기관 또는 신청수수료 납부기능이 있는 무인발급기에 현금으로 납부한 후 발급받은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합니다.

▣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

신청서,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,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확인서, 위임장, 임대사업자등록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.